



2023  
3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2023

#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이용 안내

- 본 사례집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2,716개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한 시정권고 결정현황 및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 주요 시정권고 사례는 전체 1,158건 중 법익침해 유형별로 시의성·대표성이 높은 30건의 대표 사례를 선정해,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규정된 조항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 수록된 사례에 개인정보나 단체명 등 특정 주체에 관한 정보 또는 기타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식별 불가능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 본 사례집은 사례의 설명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문 내용을 변조 없이 수록하였으므로 이용자가 이를 인용 또는 재가공하는 경우,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비식별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CONTENTS

<b>제1부</b>	<b>시정권고 현황</b>	<b>7</b>
	1. 침해유형 현황	10
	2. 매체유형별 현황	11
	3.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2
<b>제2부</b>	<b>주요 시정권고 사례</b>	<b>15</b>
	<b>제1장 개인적 법익 침해</b>	<b>17</b>
	<b>사생활 보호</b>	<b>18</b>
	사례 01. 발견 후 실종 아동 초상권 침해 (제2023-2호)	18
	사례 02. 일반인 초상권 침해 ① (제2023-434호)	20
	사례 03. 일반인 초상권 침해 ② (제2023-812호)	22
	사례 04. 유명인 가족 초상권 침해 (제2023-868호)	24
	사례 05. 미성년 자녀의 초상 공개 ① (제2023-716호)	26
	사례 06. 미성년 자녀의 초상 공개 ② (제2023-1030호)	28
	사례 07. 내밀영역 공개 (제2023-177호)	30
	사례 08. 일반인 신상 공개 (제2023-1075호)	32
	사례 09. 통신비밀 침해 ① (제2023-607호)	34
	사례 10. 통신비밀 침해 ② (제2023-612호)	36
	<b>범죄사건 보도 등</b>	<b>38</b>
	사례 11. 피의자 신원공개 ① (제2023-270호)	38
	사례 12. 피의자 신원공개 ② (제2023-523호)	40
	<b>아동학대사건 보도</b>	<b>43</b>
	사례 13. 아동학대 행위자 신원 공개 (제2023-118호)	43
	사례 14. 아동학대 행위 상세 묘사 (제2023-50호)	45

## 제2장 사회적 법익

## 차별 금지

- 사례 15. 집단 차별 표현 (제2023-768호)  
 사례 16. 국적 차별 표현 (제2023-435호)  
 사례 17. 장애 차별 표현 (제2023-128호)  
 2023년 장애 차별 표현 시정권고 및 수용 사례

## 범죄 묘사

- 사례 18.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① (제2023-563호)  
 사례 19.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② (제2023-642호)

## 성관련 보도

- 사례 20. 성 관련 선정적 묘사 (제2023-143호)

## 자살 보도

- 사례 21. 자살자 신원 공개 (제2023-471호)  
 사례 22. 자살 장소 및 방법 등 묘사 (제2023-395호)  
 사례 23. 자살 미화 및 합리화 (제2023-656호)

## 마약 및 약물 보도

- 사례 24. 약물의 환각상태 묘사 (제2023-325호)

## 폭력 묘사

- 사례 25. 언어폭력 묘사 (제2023-152호)

## 충격·혐오감

- 사례 26.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주는 내용 ① (제2023-578호)  
 사례 27.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주는 내용 ② (제2023-599호)

## 기사와 광고의 구분

- 사례 28. 기사형 광고 (제2023-161호)

## 기사 제목

- 사례 29. 본문과 부합하지 않거나 왜곡된 제목 (제2023-698호)  
 사례 30. 자극적이거나 선정적 제목 (제2023-432호)



---

# 제1부

## 시정권고 현황





## 제1부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1,158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시정권고 심의대상 매체는 2,716개였으며, 이 중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매체는 409개였다.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금지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28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생활 침해(270건), 자살보도(208건), 기사형 광고(12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차별금지 관련 시정권고 결정이 전년도에 비해 236건이나 증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이 관용적으로 사용해 온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 신문이 1,0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지(83건), 뉴스통신 (63건)순으로 뒤를 이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에 대한 결정이 1,070건에 달했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 신문, 뉴스통신)의 경우 기사를 수정, 삭제함으로써 피해가 지속, 확산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릴 경우, 법익 침해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하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 1. 침해유형 현황

2023년 1,158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 건수는 369건(31.9%), 사회적 법익 침해로 인한 결정은 789건(68.1%)을 차지하였다. 개인적 법익 침해 유형 중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이 270건(23.3%)으로 가장 많았다. 공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련 없는 사인인 가족의 초상을 공표한 경우,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통신 내용 등을 공표한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 보도’ 54건(4.7%), ‘범죄사건 보도 등’ 45건(3.9%)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적 법익 침해 유형에서는 ‘차별 금지’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286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상당수는 장애 차별과 관련한 보도로 ‘눈먼 돈’, ‘결정 장애’와 같이 장애를 부정적인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기사 제목에 사용한 경우이다. 그 밖에 자살자의 신원 및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한 자살보도에 대해 208건(18.0%), 광고형 정보를 기사형식으로 보도하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 126건(10.9%)의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표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연도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범죄 사건 보도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신고자 등 보호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범죄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보도	미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총격, 협오감	여론 조사 보도	
2021	1,291 (100)	517 (40.0)		101 (7.8)	70 (5.4)	1 (0.1)			4 (0.3)	29 (2.3)	34 (2.6)	156 (12.1)	47 (3.6)	29 (2.3)	31 (2.4)	39 (3.0)	182 (14.1)	51 (4.0)	
2022	1,239 (100)	514 (41.5)	19 (1.5)	56 (4.5)	21 (1.7)		12 (1.0)	52 (4.2)	50 (4.0)	20 (1.6)	41 (3.3)	21 (1.7)	108 (8.7)	8 (0.6)	16 (1.3)	33 (2.7)		209 (16.9)	59 (4.8)
2023	1,158 (100)	270 (23.3)		45 (3.9)			54 (4.7)		286 (24.7)	27 (2.3)	9 (0.8)	208 (18.0)	35 (3.0)	1 (0.1)	78 (6.7)		126 (10.9)	19 (1.6)	

※ ( ) 안의 숫자는 %

## 2. 매체유형별 현황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매체 가운데 인터넷 신문이 1,007건(8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스통신이 63건(5.4%)을 차지하였다. 인쇄 매체(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은 전체의 7.6%에 그쳤으며, 그 중 지역일간지 54건(4.7%), 중앙일간지 29건(2.5%) 등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인터넷 신문, 뉴스통신)가 결정을 받아들여 기사를 수정, 삭제하는 비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총 1,070건 중 657건의 기사가 수정, 삭제되어 65.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매체별, 유형별 수용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언론보도의 법익침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표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1. 1. 1. ~ 2023. 12. 31.)

연도	구분 총 계	매 체 유 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21	1,291 (100)	8 (0.6)	32 (2.5)	2 (0.2)	1 (0.1)	73 (5.6)	1,172 (90.8)	3 (0.2)
2022	1,239 (100)	21 (1.7)	44 (3.6)	3 (0.2)		81 (6.5)	1,083 (87.4)	7 (0.6)
2023	1,158 (100)	29 (2.5)	54 (4.7)	5 (0.4)		63 (5.4)	1,007 (87.0)	

※ ( ) 안의 숫자는 %

<표3> 2023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

(2023. 1. 1. ~ 2023. 12. 31.)

수용여부	수용		불수용	합계
	수정	삭제		
결정건수(%)	441(41.2%)	256(23.9%)	373(34.9%)	1,070(100%)
	697(65.1%)			

### 3.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표4>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1. 1. ~ 2023. 12. 31.)

구분	침 해 유 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연도	권고 건수	사생활 침해 등	명예 훼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신원 공개	고발 고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 학대 사건 보도	신고지 등 보도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음란 포악 잔인 범죄 묘사	범죄 수사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공중 도덕 및 사회 윤리 침해	기타	
19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3	3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9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6	3	3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7	6	4	-	-	-	-	2	-	-	-	-	-	-	-	-	-	-	-	-	-	-	-	-	-	-	-	-	-
1988	37	16	-	3	-	-	9	-	-	-	-	-	-	-	-	-	-	-	-	-	-	-	-	-	-	-	9	
1989	180	36	-	92	-	-	52	-	-	-	-	-	-	-	-	-	-	-	-	-	-	-	-	-	-	-	-	
1990	311	67	-	169	12	-	63	-	-	-	-	-	-	-	-	-	-	-	-	-	-	-	-	-	-	-	-	
1991	264	34	-	140	16	-	70	-	-	-	-	-	-	-	-	-	-	-	-	1	-	-	-	-	-	-	3	
1992	390	34	-	227	3	-	123	-	-	-	-	-	-	-	-	-	-	-	-	-	-	-	-	-	-	-	3	
1993	344	10	-	228	-	-	106	-	-	-	-	-	-	-	-	-	-	-	-	-	-	-	-	-	-	-	-	
1994	204	7	-	132	-	-	58	-	-	-	-	-	-	-	-	-	-	-	-	7	-	-	-	-	-	-	-	
1995	282	-	-	131	-	-	29	-	-	-	-	-	-	-	-	-	-	-	-	121	-	-	-	-	-	-	1	
1996	310	11	-	122	22	-	26	-	-	-	8	-	-	-	-	-	-	-	4	117	-	-	-	-	-	-	-	
1997	469	2	-	76	182	-	21	-	-	-	78	-	-	-	-	-	-	-	-	109	-	-	-	-	-	-	1	
1998	348	-	-	29	151	-	16	-	-	-	14	-	-	-	-	-	-	-	1	137	-	-	-	-	-	-	-	
1999	240	-	-	20	126	-	17	-	-	-	11	-	-	-	-	-	-	-	-	66	-	-	-	-	-	-	-	
2000	234	2	-	8	67	-	54	-	-	-	6	-	-	-	-	-	-	-	-	97	-	-	-	-	-	-	-	
2001	231	1	-	9	70	-	22	-	-	-	10	-	-	-	-	-	-	-	-	119	-	-	-	-	-	-	-	
2002	142	1	-	-	88	-	9	-	-	-	-	-	-	-	-	-	-	-	-	44	-	-	-	-	-	-	-	
2003	237	2	-	41	153	-	13	-	-	-	1	-	-	-	-	-	-	-	-	20	-	-	-	-	-	-	7	
2004	283	2	-	114	68	-	7	-	-	-	1	-	-	-	-	-	-	-	21	52	-	-	-	-	-	-	18	
2005	278	10	-	88	24	-	11	-	-	-	-	-	-	-	-	-	-	-	85	47	-	-	-	-	-	-	12	1
2006	190	3	-	68	23	-	4	-	-	-	2	-	-	-	-	-	6	-	73	10	-	-	-	-	-	-	1	

구분	침 해 유 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연도	권고 건수	사생활 등 침해	명예 훼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고소 고발 보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 학대 사건 보도	신고자 등 보호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북한 이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음란 포악 자인 범죄 묘사	범죄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총격 혐오감	여론 조사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공중 도덕 및 사회 윤리 침해	기타
2007	202	14	-	80	21	-	1	-	-	-	2	-	-	-	-	-	-	-	44	30	-	7	-	-	-	-	3
2008	289	30	-	48	8	-	4	-	-	-	-	-	-	-	-	-	62	7	97	27	-	4	-	-	-	2	
2009	253	14	-	98	6	-	-	-	-	-	1	-	-	-	-	-	2	-	93	-	-	2	2	-	-	35	
2010	284	10	-	49	2	-	2	-	-	-	-	-	-	-	-	-	17	-	199	4	-	-	1	-	-	-	
2011	426	36	-	100	-	-	2	-	-	-	-	-	-	-	-	-	4	-	189	95	-	-	-	-	-	-	
2012	259	5	-	40	-	-	5	-	-	-	3	-	1	-	-	-	40	-	49	116	-	-	-	-	-	-	
2013	289	23	-	35	-	-	-	-	-	-	1	-	-	-	-	-	31	-	78	89	-	32	-	-	-	-	
2014	302	25	-	16	-	-	5	-	-	-	-	-	-	29	9	51	4	73	75	-	13	2	-	-	-	-	
2015	438	92	-	5	-	1	-	-	-	-	10	-	-	-	-	-	16	8	62	135	-	14	-	95	-	-	
2016	912	134	-	43	4	262	20	-	-	-	4	75	-	-	-	4	22	5	124	28	-	14	-	173	-	-	
2017	1,034	217	4	280	70	-	27	-	-	-	5	2	3	-	-	57	2	1	84	13	1	70	-	198	-	-	
2018	1,275	230	-	108	1	-	339	-	-	-	4	2	7	-	-	21	31	13	287	-	23	73	-	136	-	-	
2019	1,288	458	25	101	-	-	66	1	-	-	-	12	1	9	-	21	68	27	77	42	12	105	123	132	8	-	
2020	935	188	-	28	-	-	24	-	-	-	-	-	17	110	-	-	2	43	112	30	37	66	102	157	19	-	
2021	1,291	517	-	101	-	-	70	1	-	-	-	-	-	4	-	29	-	34	156	47	29	31	39	182	51	-	
2022	1,239	514	19	56	-	-	21	-	12	52	-	-	-	50	20	27	14	21	108	8	16	33	-	209	59	-	
2023	1,158	270		45					54					286		27		9	208	35	1	78		126	19		
계	16,860	3,022	48	2,930	1,117	263	1,298	2	66	52	161	91	29	459	49	195	368	172	2,224	1,721	119	542	269	1,406	156	12	87
%	100.0	17.9	0.3	17.4	6.6	1.5	7.7	0.0	0.4	0.3	1.0	0.5	0.2	2.7	0.3	1.2	2.2	1.0	13.2	10.2	0.7	3.2	1.6	8.4	0.9	0.1	0.5



---

## 제2부

# 주요 시정권고 사례





## 제1장

# 개인적 법익 침해

사생활 보호  
범죄사건 보도  
아동학대사건 보도



## 제1장

# 개인적 법익 침해

### 사례 01 사생활 보호 - 발견 후 실종 아동 초상권 침해

의결번호	제2023-2호	매체명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대상보도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22년 12월 20일 사회면 「폭설 때 사라진 광주 중학생, 실종 나흘 만에 무사히 돌아왔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광주광역시에서 실종신고 된 중학생의 무사 귀가 사실을 보도하면서, 해당 아동의 실종 당일 CCTV사진과 근황사진 및 성명을 공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신속한 실종자 발견 등을 위해 실종보도에 통상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견 후 귀가조치 된 아동의 신원을 공표하는 것까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초상 및 성명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실종 당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근황사진을 삭제하고 성명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 사례 02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초상권 침해 ①

의결번호	제2023-434호	매체명	뉴스속닥
대상보도	뉴스속닥 2023년 04월 26일 패스티이슈면 「“난 기억없어.. ○○○ 군무원 신상, ‘학폭’ 가해 사실 없다 했지만 거짓말 딱 걸렸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방송 등을 통해 피해사실과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사건을 다루면서,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로 오인될 수 있는 인물 등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 및 근황 사진을 공개하며 개인의 초상을 식별 가능하도록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당사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다룬 보도임을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초상 공표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유튜브 폭로 영상을 통해 가해 당사자의 초상이 이미 공표되었더라도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보도가 학교폭력을 고발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은 있으나, 가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초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볼 수 없다. 비록 초상 일부가 비식별 처리되었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당사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아차릴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위 기사의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 사례 03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초상권 침해 ②

의결번호	제2023-812호	매체명	디스패치뉴스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3년 09월 18일 SNSFeed면 「“의정부 교사 가해 학부모 ○○○와 그 아들” 신상 폭로 SNS 등장」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 등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이른바 학부모 갑질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초등교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개인의 SNS에 공개된 사건 관련 학부모와 자녀의 성명과 신상을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해당 학부모 측이 사망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적극 대응의사를 밝힌 점을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성명 등의 공표에 동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안에 관한 것이나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사인의 신원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성명과 신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 사례 04 사생활 보호 - 유명인 가족 초상권 침해

의결번호	제2023-868호	매체명	인터넷 스포츠서울
대상보도	인터넷 스포츠서울 2023년 10월 04일 연예면 「아빠*된 ○○ ○○○, 사기혐의 피소...NFT 사업 홍보에 불똥」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유명 프로그래머 겸 방송인이 게임 사업에 연루된 수십억 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결혼사진을 공개하며 사안과 무관한 배우자의 초상을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해당 방송인과 달리 배우자의 경우 일반 사인에 불과하며, 유명인의 배우자로서 과거 방송에 동반 출연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과거 방송을 통해 공표된 초상을 재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남편의 사기 혐의를 다룬 보도에 대해서까지 당사자의 초상에 대한 동의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초상 당사자인 배우자는 보도논점과도 무관하므로 배우자의 초상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배우자의 초상이 함께 공개된 결혼사진을 삭제하고 유명 프로게이머 겸 방송인의 단독 사진으로 수정하였다.

## 사례 05 사생활 보호 - 미성년 자녀의 초상 공개 ①

의결번호	제2023-716호	매체명	원투뉴스
대상보도	원투뉴스 2023년 07월 27일 이슈면 「특수 교사 고발한 유명 웹툰 작가가 ○○○이었어?...무슨일이길래」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인 미성년자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발달장애 자녀의 담당교사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유명 웹툰작가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과거 작가의 개인 SNS에 게시된 가족사진을 사용하며 해당 작가의 미성년 자녀들 초상을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장애로 인한 돌발행동에서 비롯된 부정적 사안을 다룬 보도에서 문제행동의 당사자인 장애아동 및 그 형제의 초상을 공표하는 데 당사자 측의 동의의사를 추정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설령 해당 작가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그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의 경우 일반 사인에 불과하고 공적 인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자체가 아닌 자녀들의 초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 기사의 초상 공표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 사례 06 사생활 보호 - 미성년 자녀의 초상 공개 ②

의결번호	제2023-1030호	매체명	오에스이엔(OSEN)
대상보도	오에스이엔(OSEN) 2023년 10월 31일 연예면 「○○○·○○○, 잉꼬부부→이혼, 14년 결혼생활 화제 모먼트 [Oh!썸 초점]」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과 이름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유명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의 이혼경위 및 각종 논란을 보도 하면서, 유명 아나운서의 개인 채널에 출연한 미성년 자녀의 영상을 바탕으로 자녀의 초상과 이름을 함께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이미 공표된 자녀 초상 등을 재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모에 관한 부정적 사안을 다룬 보도에서까지 당사자로서 **자녀 본인의 동의를사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보도논점도 자녀와 무관하므로 이를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해당 방송인과 달리 자녀는 **일반 사인에 불과하여 공적 인물로 볼 수 없으며**,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 기사의 초상과 이름의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미성년 자녀의 초상과 성명이 함께 공개된 사진을 삭제하였다.

## 사례 07 사생활 보호 - 내밀영역 공개

의결번호	제2023-177호	매체명	경기연합신문
대상보도	경기연합신문 2023년 02월 17일 연예면 「"헤르페스 성병 옮았다" 폭로한 누리꾼에 '나는 솔로' 13기 남성 출연자 2명 지목됐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연애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 사인(私人)에 관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병 의혹이 폭로된 상황을 보도하면서, 방송출연 사진과 방송에서 사용한 가명을 공개하여 해당 인물을 특정하고 해당 인물의 내밀한 개인병력을 단정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를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당사자 초상 중 얼굴 부분을 비식별처리하였으나, 출연자별로 부여된 가명을 언급하고 폭로 글에서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제시한 옷 사진을 특정 출연자의 방송의상과 대응시켜 보도함으로써 특정 출연자가 성병 폭로의 대상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한 개인의 병력 등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나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병력 등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의 내밀영역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 사례 08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신상 공개

의결번호	제2023-1075호	매체명	프리덤 조선(Freedom ChoSun)
대상보도	프리덤 조선(Freedom ChoSun) 2023년 11월 17일 정치·사회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탈북민 74명, 중국공안이 체포해 강제북송?»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증이 전부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관련 인권단체가 추적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초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된 주민등록증을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1항 및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 권고 이유

공표된 신분증의 당사자는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2006년 이후로 현재까지 생사불명인 상태이고 주변 가족의 소재나 의사확인도 곤란할 것으로 보여 현 시점에서 신분증 공표에 관한 당사자 측의 동의 의사는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사건의 경우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인 만큼 공적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를 추적 중인 인권 단체의 노력을 감안할 때 당사자 식별을 위한 일정 수준의 개인 정보 공표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실종자 수색이나 제보 수집 등을 위한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의 핵심을 이루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신분증의 내용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불온한 목적의 도용 등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당사자 측의 의사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의 신분증 전부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에 공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 하였다.

## 사례 09 사생활 보호 - 통신비밀 침해 ①

의결번호	제2023-607호	매체명	에스미디어
대상보도	에스미디어 2023년 06월 25일 연예면 「축구 선수 ○○○ 여자친구의 사생활 폭로, ○○○ 공식입장 발표」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유명 축구선수에 관한 사생활 폭로 사건을 보도하면서, 축구선수와 연인사이였던 관계를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신내용 및 성관계 장면을 충분히 식별가능하도록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1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해당 폭로 이후 당사자가 폭로내용을 부인하며 유포자를 고소한 사실로 볼 때 문제된 공표행위는 명백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가 널리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성관계나 이성교제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공표까지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실제 성관계 장면이나 잦은 이성교제에 관한 구체적인 통신내용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공표된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사생활 폭로내용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 사례 10 사생활 보호 - 통신비밀 침해 ②

의결번호	제2023-612호	매체명	인터넷 중앙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중앙일보 2023년 07월 04일 사회면 「“〇〇 〇〇〇, 내 아내와 불륜”...녹취록 폭로한 40대 남편 송치」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유명 연예인의 불륜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관하여 보도 하면서, 해당 연예인과 불륜 의혹 상대방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사적 통신내용을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1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자신의 아내와 모 연예인 간 불륜의혹을 제기한 남성이 당사자인 해당 연예인을 고소하여 형사입건에 이르렀고 검찰 송치된 혐의의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문제된 통신내용 공표 또한 범행의 주요 수단 중 하나를 구성하는 바, 이를 다투는 법적공방에 관한 보도에서 그 통신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훼손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의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 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통신내용을 삭제하였다.

## 사례 11 범죄사건 보도 등 - 피의자 신원공개 ①

의결번호	제2023-270호	매체명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대상보도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2023년 03월 20일 사회면 「“사과 박스 같다” 미술 동호회 단톡방에 환자 내시경 사진 뿌린 의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자신이 검진한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내시경 사진 등을 SNS 메신저에 유포하여 기소된 의사에 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소개 문구 및 특징적인 이력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해당 보도가 사건·사고를 다루는 공익 목적의 기사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거나 해당 피고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그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소개 문구를 구체적으로 언급, 공표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한 부분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소개 문구 및 특징적인 이력을 구체적으로 공표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 사례 12 범죄사건 보도 등 - 피의자 신원공개 ②

의결번호	제2023-523호	매체명	나남뉴스
대상보도	나남뉴스 2023년 06월 13일 뉴스면 「“이해가 안되네” 부산 돌려차기男의 반성문 공개에 모두 분노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부산에서 발생한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유튜브가 공개한 피고인의 신원정보를 보도하면서 해당 피고인의 초상, 성명, 나이, 출생지, 직업, 키, SNS계정 등 개인 정보를 상세히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당사자는 형사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으며, 재판 진행 중 유명 유튜브의 폭로로 당사자의 신상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의적인 신상 공표는 사적 제재수단에 불과하여 반드시 공공성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범위를 넘어서 직업, SNS계정 등의 정보까지 공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의 신상정보 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 보도의 원칙 등에 반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관련 조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조항은 2023.10.24. 법률 개정을 통해 폐지됨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피고인의 초상 및 근무지 등 신원을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사례 13 아동학대사건 보도 - 아동학대 행위자 신원 공개**

의결번호	제2023-118호	매체명	더데이즈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3년 01월 01일 화제의PICK면 「창녕 아동학대 엄마 신상 목숨 걸고 탈출한 아이의 근황까지 사건 내용 총정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6조의2 (아동학대사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아동학대사건 가해자(학대행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지난 2020년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학대행위자인 계부와 친모의 초상,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①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해당 사건 이후 피해아동이 위탁가정 보호 하에 학대행위자들로 부터 분리된 지 수년이 경과한 점, 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그대로 공표할 경우 피해아동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피해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의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학대행위자)의 신상 정보를 공표한 것은 피해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사례 14 아동학대사건 보도 - 아동학대 행위 상세 묘사

의결번호	제2023-50호	매체명	조선비즈
대상보도	조선비즈 2022년 12월 21일 연예면 「‘결혼지옥’ 측, “의붓딸 ‘신체접촉’ 장면, 많은 분께 심려 끼쳐...변명의 여지 없다” (전문)」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6조의2 (아동학대사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아동 학대행위가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재혼가정에서 의붓딸과 의부의 놀이 장면에서 의부의 과도한 신체 접촉 장면 노출로 논란이 된 방송프로그램에 관해 보도 하면서, 다수 시청자로부터 성추행 등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방송영상을 공개하며 아동의 피해상황을 그대로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①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해당 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더라도, 문제영상을 비판하는 기사 스스로 해당 영상을 재공표하는 것이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 볼 수 없다. 특히 학대 의혹을 받는 행위의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정황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해당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의 아동 학대행위가 지나치게 묘사된 부분은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아동 학대행위가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된 방송 장면을 삭제하였다.

## 제2장

# 사회적 법익

차별 금지

범죄 묘사

성관련 보도

자살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혐오감

기사와 광고의 구분

기사 제목



## 제2장

# 사회적 법익

### 사례 15 차별 금지 - 집단 차별 표현

의결번호	제2023-768호	매체명	위키�트리(Wikitree)
대상보도	위키텍트(Wikitree) 2023년 07월 25일 사회면 「맘충 ‘악성 민원’으로 문 닫은 소아과 원장, 직접 등판했다 (ft. 사이다 결말)」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폐업사유로 밝힌 악성민원 경위를 보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비하 내지 경멸하는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권고 이유

해당 인물의 행태가 사회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혹은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집단 간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커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맘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맘충 ‘악성 민원’으로 문 달은 소아과 원장, 직접 등판했다 (ft. 사이다 결말)	맘충 ‘악성 민원’으로 문 달은 소아과 원장, 직접 등판했다 (ft. 사이다 결말)

## 사례 16 차별 금지 - 국적 차별 표현

의결번호	제2023-435호	매체명	원픽뉴스
대상보도	원픽뉴스 2023년 05월 08일 사회면 「“사진 보고 중국인 줄”.. 상자에 아기 넣은 채 오토바이 주행하는 ‘소름 돋는’ 모습에 누리꾼 ‘발칵」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 국적에 대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실제 아기를 상자에 담아 오토바이에 싣고 주행하는 위험한 모습이 국내에서 목격된 사실을 전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 내지 경멸이 내포된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권고 이유

해당 보도가 화제가 된 사건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국적에 대한 편견 내지 경멸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국적 소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커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진보고 중국인 줄’이라는 표현을 ‘이게 우리 나라였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 <b>사진보고 중국인 줄</b> ”.. 상자에 아기 넣은 채 오토바이 주행하는 ‘소름 돋는’ 모습에 누리꾼 ‘발칵’	“ <b>이게 우리나라였어?</b> ”.. 상자에 아기 넣은 채 오토바이 주행하는 ‘소름 돋는’ 모습에 누리꾼 ‘발칵’

### 사례 17 차별 금지 - 장애 차별 표현

의결번호	제2023-128호	매체명	인터넷 국민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23년 01월 30일 「'눈먼 돈' 청년전세대출」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정부의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상황을 ‘눈먼 돈’에 빗대어 언급함으로써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권고 이유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내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사제목에 사용한 표현은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눈먼’이라는 표현 대신 ‘서류 심사 허점 노린’이란 표현으로 기사 제목을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눈먼 돈’ 청년전세대출	‘서류심사 허점 노린’ 청년전세대출

## 2023년 장애 차별 표현 시정권고 및 수용 사례

### 1. 시정권고 현황

(단위: 건)

장애차별	집단차별	국적차별	성 차별	나이차별	지역차별	합 계
274	4	3	3	1	1	286

### 2. 시정권고 표현

(단위: 건)

눈먼	결정 장애	장애를 앓다	병어리	선택 장애	외눈박이	절름 발이	합 계
228	14	11	10	5	4	2	274

### 3. 수용사례

장애차별 ㉠표현을 삭제 하거나 ㉡유사 어휘로 대체하는 경우. 또는 ㉢기존 제목을 직관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 눈먼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보조금이 눈먼 돈?’ 곡성군, 체육분야 지원 관리 허술	‘보조금이 눈먼 돈?’ 곡성군, 체육분야 지원 관리 허술
②	[사실] 글로벌 대학 지원금 3조원은 혈세, ‘눈먼 돈’ 대선 안 돼	[사실] 글로벌 대학 지원금 3조원은 혈세, ‘애먼 돈’ 대선 안 돼
③	‘눈먼 보조금’ 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고’ 수준	‘부정수급 시비’ 보조금 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고’ 수준

## - 결정 장애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기업공개 차질 빛는 케이뱅크, 서호성 강행·연장·철회 <b>‘결정 장애’</b> 이유	기업공개 차질 빛는 케이뱅크, 서호성 강행·연장·철회 <b>‘결정 장애’</b> 이유
②	“푸틴, 바그너 반란 당시 <b>결정 장애</b> ...경고받고도 진압 지시 안해”	“푸틴, 바그너 반란 당시 <b>우유부단</b> ...경고 받고도 진압지시 안해”
③	“뭐 먹을래?” “글쎄...” <b>결정 장애</b> 가 우울증 전조증상?	“뭐 먹을래?” “글쎄...” <b>결정에 어려움 느끼는 게</b> 우울증 전조증상?

## - 장애를 앓다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청주 용암동 아파트서 모친 흥기 살해한 10대 <b>‘자폐 앓아’</b>	청주 용암동 아파트서 모친 흥기 살해한 10대 <b>‘자폐 앓아’</b>
②	<b>정신장애 앓는</b> 친구 딸 성추행·신체 촬영 70대 징역 6년	<b>정신장애 가진</b> 친구 딸 성추행·신체 촬영 70대 징역 6년
③	<b>장애 앓던</b> 아기 숨지자 선산에 유기한 엄마 ‘검거’	<b>다운증후군</b> 아기 숨지자 선산에 유기한 엄마 ‘검거’

## - 꿀 먹은 벙어리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b>‘꿀 먹은 벙어리’</b> 였던 YG, 제니 ‘키스·반신욕’ 사진에 5개월만 사태 수습	<b>‘꿀 먹은 벙어리’</b> 였던 YG, 제니 ‘키스·반신욕’ 사진에 5개월만 사태 수습
②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b>꿀 먹은 벙어리</b> 인가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b>묵묵부답</b> 인가
③	<b>‘꿀 먹은 벙어리</b> 더니’ 때 늦게 공개토론 ... “기가 막혀”	<b>‘침묵’</b> 하더니’ 때 늦게 공개토론 ... “기가 막혀”

**사례 18** 범죄 묘사 -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①

의결번호	제2023-563호	매체명	커넥트뉴스(Connect News)
대상보도	커넥트뉴스(Connect News) 2023년 06월 07일 뉴스면 「[영상]여성 BJ, 길거리 폭행 생방송, 포크로 얼굴 찍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범죄묘사), 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1. 대상보도 중 폭행사건의 범행 수법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2. 대상보도 중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인터넷 개인방송 중 진행자 간 벌어진 노상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폭행영상을 충분히 식별가능한 정도로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 12조 제1항 및 제16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폭력 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직접적인 폭행 순간의 영상 일부를 비식별조치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구체적인 가해행위는 여전히 식별가능하다. 이처럼 범행의 잔인성 내지 폭력성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는 것은 독자에게 정신적 충격 및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 정서적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폭력 장면 및 범행 수법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사진을 삭제하였다.

**사례 19** 범죄 묘사 -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②

의결번호	제2023-642호	매체명	포스트쉐어(postshare)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3년 0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범인 전과 17범 30대 남성... 사건 당시 끔찍한 CCTV 유출됐다 (+영상)」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범죄묘사)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범행 수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한 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신림동 흥기난동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가해자가 흥기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 피해자가 저항하는 장면 등 사건의 CCTV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공표하여 「시정 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범죄보도의 특성상 포악하거나 잔인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 및 범죄의 심각성 고발 등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건 전반의 경위나 발생원인 등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목적을 넘어 구체적인 범행 동작이나 잔혹함의 정도까지는 공익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는 것은 독자에게 정신적 충격 및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 정서적 해악을 미칠 우려가 커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 사례 20 성관련 보도 - 성 관련 선정적 묘사

의결번호	제2023-143호	매체명	뉴스시스(NEWSIS)
대상보도	뉴스시스(NEWSIS) 2023년 01월 02일 국제면 「성추행 아니라 일..여성 속옷 안까지 샅샅이 몸수색한 태국 경찰」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태국의 한 행사장에서 경찰이 입장객들에 대한 몸수색을 실시하던 도중 불거진 논란에 관해 보도하면서, 행사 경비원이 행사 참가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사진을 식별 가능하도록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①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신체 접촉 당시의 장면을 노출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사진을 게재하여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사진을 비식별처리 하였다.

## 사례 21 자살 보도 - 자살자 신원 공개

의결번호	제2023-471호	매체명	매일안전신문
대상보도	매일안전신문 2023년 05월 10일 종합뉴스면 「원주시청 20대 공무원, 거제시 출장 중 리조트서 추락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출장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자살 추정 사망사실을 보도하면서, 소속, 직급, 나이, 발령시기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신상정보들을 함께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 권고 이유

기사의 내용이 공무 현장의 업무과중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아닌 사망자가 누구인지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신상정보를 공표한 것은 당사자 및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나이, 직급, 업무내용, 발령시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소속 부서를 수정하였다.

## 사례 22 자살 보도 - 자살 장소 및 방법 등 묘사

의결번호	제2023-395호	매체명	완두뉴스
대상보도	완두뉴스 2023년 04월 17일 뉴스면 「"SNS 생중계했다.." 빌딩에서 투신한 10대 여학생의 끔찍한 장면에 모두가 경악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장소 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10대 여성이 SNS를 통해 자신의 투신 장면을 생중계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여성의 투신 전후 주요 장면을 공개하는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 권고 이유

기사가 정확한 사실 관계의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요지를 넘어 자살의 구체적 진행 과정이나 실행 당시의 현장 상황 등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독자에게 자살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 사례 23 자살 보도 - 자살 미화 및 합리화

의결번호	제2023-656호	매체명	e머니에스(e money S)
대상보도	e머니에스(e money S) 2023년 06월 21일 「“짚값 치르려 해”... ‘거짓 암투병 논란’ ○○○,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경연 프로그램 출신 유명 가수의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가수가 개인 커뮤니티에 남긴 유서 성격의 게시글 중 생전의 과오를 자살로써 속죄하는 취지의 문구를 여과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3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개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당사자가 속죄나 참회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삶의 위기에 노출된 일부 독자들에게 모방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속죄나 참회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였다.

## 사례 24 마약 및 약물 보도 - 약물의 환각상태 묘사

의결번호	제2023-325호	매체명	동아닷컴
대상보도	동아닷컴 2023년 03월 17일 사회면 「○○○ 손자, 방송 중 마약 투약..."살려주세요" 환각 난동」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전직 대통령 일가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가 폭로 당시 유튜브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충분히 식별 가능한 사진 및 환각증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② 언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해당 유튜브 영상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식별처리를 하였더라도, 그 조치가 미흡하여 마약 투약 방법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이는 미성년자 등 일부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범죄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약물 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환각상태 사진을 삭제하였다.

## 사례 25 폭력 묘사 - 언어폭력 묘사

의결번호	제2023-152호	매체명	보리포스트
대상보도	보리포스트 2023년 01월 09일 핫이슈면 「삼성직원이 알려주는 걸러야할 여자 리스트 ㄱ」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6조 (폭력묘사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언어폭력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게시글과 이에 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도하면서,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여과 없이 공표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묘사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폭력 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게시글에 대한 누리꾼 댓글 원문을 직접 기사에 인용하고 욕설 등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세히 묘사하여 독자에게 정서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26** 충격·혐오감 -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주는 내용 ①

의결번호	제2023-578호	매체명	애니멀플래닛
대상보도	애니멀플래닛 2023년 06월 01일 「기름 ‘펄펄’ 끓고 있는 솥에 강아지 내던져 죽게 만든 남성 알고 보니 충격적이게도 경찰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해외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기름이 끓는 솥에 동물을 산 채로 던져 넣어 발버둥치는 장면을 여과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공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 사례 27 충격·혐오감 -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주는 내용 ②

의결번호	제2023-599호	매체명	인터넷 헤럴드경제
대상보도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3년 06월 07일 국제일반면 「"급식서 쥐 머리가" 이물질 영상 난리났는데...申당국 "오리 목" 발뺌 [차이나픽]」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심의 개요

해외의 한 대학 구내식당에서 음식물에 동물 사체 일부가 혼입된 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해당 사체의 형상을 충분히 식별가능한 정도로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동물 사체의 형상을 충분히 식별가능한 정도로 공표한 사진은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어 시정 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 사진을 비식별처리 하였다.

## 사례 28 기사와 광고의 구분 - 기사형 광고

의결번호	제2023-161호	매체명	매경닷컴
대상보도	매경닷컴 2023년 01월 18일 IT·과학면 「제주 푸른바다와 한라산 한눈에 조망하는 ‘○○○ 요양병원’ 개원」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		

### 심의 개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명, 의료인명, 상세주소, 전경 사진** 등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권고 이유

해당 의료기관의 위치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관련 조문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기준)** ①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실거나 방송하면서 특정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실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병원명, 상세주소 및 의료인명을 삭제하였다.

**사례 29** 기사 제목 - 본문과 부합하지 않거나 왜곡된 제목

의결번호	제2023-698호	매체명	투데이 플로우
대상보도	투데이 플로우 2023년 07월 11일 연예면 「“○○○ 딸 ○○○..외할머니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현재 외할머니 상대로 고소까지 진행 한 상태..(+정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사망한 유명 연예인의 가족 간에 발생한 갈등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사실과 무관한 왜곡된 내용을 제목에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제목과 달리 기사 본문에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이에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왜곡된 정보로 인한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30** 기사 제목 - 자극적이거나 선정적 제목

의결번호	제2023-432호	매체명	뉴스특독
대상보도	뉴스특독 2023년 04월 03일 뉴스면 「손녀뻘 알바생에게 “XX 축축하게 빨아줄께..” 음담패설한 노인에 공분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1. 대상보도 중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2. 대상보도의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사건 당시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 중 변태적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21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성관련 보도)** ②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권고 이유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 중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여과 없이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의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손녀뻘 알바생에게 “XX 축축하게 빨아줄께..” 음담패설한 노인에 공분했다	손녀뻘 알바생에게 <b>입에 못담을</b> 음담패설한 노인에 모두 공분했다



# 부록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정	1981. 11. 30.
개정	1989. 10. 5.
	1996. 12. 13.
전부개정	2004. 8. 23.
전부개정	2005. 7. 22.
전부개정	2008. 3. 18.
전부개정	2011. 8. 22.
개정	2014. 12. 15.
	2016. 7. 14.
	2016. 11. 21.
	2018. 7. 18.
	2018. 12. 19.
	2019. 3. 20.
	2019. 8. 21.
	2021. 1. 27.
	2021. 11. 24.
	2022. 6. 29.
	2024. 1. 25.
	2024. 2. 20.

## 제 1 장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17조,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 <개정 2014.12.15.>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개정 2014.12.15.>

[제목개정 2014.12.15.]

**제2조(명예훼손 금지)** ①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제2항).

②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제1항).

③ 언론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8조).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27조 제4항,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개정 2014.12.15., 2016.11.21., 2024.2.20.>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개정 2019.8.21.>

③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신설 2014.12.15.>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① 언론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개정 2014.12.15.>

② 언론은 성폭력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5., 2018.7.18., 2022.6.29.>

③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이나 성희롱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7.18., 2022.6.29.>

[제목개정 2014.12.15.]

**제5조(유괴사건 보도)** 언론은 유괴사건 보도에서 유괴된 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아동·청소년의 보호)** ①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소년법」 제68조). <개정 2014.12.15.>

②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신설 2014.12.15.>

③ 언론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조 제1항 단서). <신설 2014.12.15.>

[제목개정 2014.12.15.]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①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② 언론은 아동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24.]

**제7조(가정폭력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2항). <신설 2022.6.29.>

② 언론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사소송법」 제10조). <개정 2022.6.29.>

[제목개정 2022.6.29.]

**제8조(신고자등 보호)**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2. 부패행위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3.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9.8.21.]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3.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금지된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 사항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2 장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제10조(보도 윤리)** ①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9.>

②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9.>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개정 2019.3.20.>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

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0.>

[본조신설 2016.7.14.]

**제11조(재난 보도)** 언론은 재해 및 대형 참사 보도에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범죄 묘사)**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언론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성관련 보도)** ①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③ 언론은 간통, 원조교제 등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살 보도)**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①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폭력 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판 등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①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법령에 의한 조정 및 중재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그 절차상 지극한 정보 또는 참여자의 발언내용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5.>

[제목개정 2024.1.25.]

**제19조(여론조사 보도)**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단,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21.1.27.>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본조신설 2014.12.15.]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8.21.]

### 제 3 장 국가적 법익 침해금지

**제22조(국가안전보장 등)** 언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국가기밀 누설금지)** 언론은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98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 서울

- ☉ 주 소 :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1층
- ☉ 대표전화 : 02) 397-3114
- ☉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3110, 3111
- ☉ 홈페이지 : [www.pac.or.kr](http://www.pac.or.kr)
-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ac3083>
-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http://www.facebook.com/pacnews)
-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pacpr>

### 지역

- 부산** (482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6층(수영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 대구**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1402호(신천동, 대구무역회관)  
☎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 광주**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5층(치평동, 우체국보험광주회관)  
☎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 대전**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8층(도룡동, MBC 대전문화방송국)  
☎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 경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9층(인계동, 경기문화재단)  
☎ 031) 211-9022, 9027 / FAX 031) 212-0223
- 강원** (24376)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 1층(퇴계동, 국민연금춘천회관)  
☎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 충북** (2862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404호(산남동, 엔젤변호사빌딩)  
☎ 043) 286-8081, 8083 / FAX 043) 286-8084
- 전북**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05호(효자동3가, 전주상공회의소)  
☎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 경남**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703호(중앙동)  
☎ 055) 263-1780, 1787 / FAX 055) 263-1769
- 제주** (63210)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01, 3층(이도이동)  
☎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 2023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작 2024년 6월 10일

발행 2024년 6월 10일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시정권고심의팀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제작 타라티피에스 그래픽스사업부문 02)569-1472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이 책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